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.

발 의 자 : 이종배·권영진·안철수
곽규택·서명옥·김기웅
송석준·진종오·이소희
김태호·최은석·이만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·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육아시간 활용이 가능함.

이에 근로자도 공무원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19조의2제3항 등)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제3항 중 “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제19조의4제2항 전단 중 “나누어”를 “일 단위로 나누어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 ①·② (생 략)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<u>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</u> ④ ~ ⑦ (생 략)</p> <p>제19조의4(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) ① (생 략)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<u>나누어</u> 사용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(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) 이상 이 되어야 한다.</u></p>	<p>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한다.</u></p> 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의4(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<u>일 단위로 나누어</u>----- -----<u>.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u></p>